경영유의 사항 공개

1. 금융회사명 : 글로벌원자산운용㈜

2. 조치일 : 2021. 11. 12.

3. 조치내용

제재대상	제재내용
기관	○ 경영유의사항 4건

4. 조치대상사실

가. 경영유의사항

(1) 자문수수료 등 계약 관련 내부통제 강화 필요

글로벌원자산운용㈜은 자문계약 제도를 운용함에 있어서 계약 체결 시 자문기관 선정기준, 자문보수 산정근거 및 자문용역의 결과물 등과 관련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는 등 관리가 미흡한 바,

계약 상대방을 선정하고 보수를 지급하기 위한 적절한 기준을 마련하고, 자문용역에 대한 사후관리 기록을 유지하는 등 각종 수수료 지급 계약과 관련된 내부통제 절차를 강화하여 운영할 필요

(2) 사전자산배분 기준 및 절차 개선 필요

글로벌원자산운용㈜의 '집합투자재산 사전자산배분 기준'에 REPO에 대한 사전자산배분 원칙이 정해져 있지 않고, 동 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자산의 사전배분 시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등 미흡한 면이 있는 바,

집합투자재산 종류별로 사전자산배분 원칙을 마련하고, 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집합투자재산은 사전배분 시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등 사전자산 배분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강화할 필요

(3) 담보대상 해외주식 선정 등 관리 강화 필요

글로벌원자산운용㈜은 인도네시아 주식을 담보로 한 REPO에 투자하는 '□□□□□□□□투자신탁○○호' 등 4개 펀드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담보주식의 거래량 부족으로 반대매매를 통해 투자원금을 제때에 회수하지 못한 사실이 있는 바,

향후 해외주식을 담보로 한 거래를 할 때에는 반대매매를 통한 투자원금 회수가 적시에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식 보유수량 대비 거래량 등을 고려하여 담보 주식을 선정하고 해외 주식시장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

(4) 동산 담보물 관리 강화 필요

글로벌원자산운용㈜은 육류 수입업체가 발행한 수입육류 담보 사모사채에 투자하는 '△△△△△△△△투자신탁●호'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차주가 수입육류를 임의로 처분하거나 다른 금융회사에 이중 담보로 제공함으로 인해 펀드 만기일에 사채대금을 상환받지 못하고 환매 연기된 사실이 있는 바,

향후 동산을 담보로 한 거래를 할 때에는 유효한 담보를 수취하거나 동산 담보물 상태를 직접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제3자를 통해 점검하는 등 동산 담보 관리를 강화할 필요